

중복출판, 이차출판

폐간 학술지의 재게재

학회에서 수년 전 기존 한글 학술지 이외에 영문 학술지를 별도로 만들고 6개월 간격으로 2회 발간 후 폐간하였다. 당시 이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영문논문을 저자 승인을 거쳐 국문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가?

답변:

폐간된 잡지이기 때문에 동일 기관에서 발행하는 다른 공식학술지에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출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논문의 내용(대상, 방법, 저자명 등)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되고, 폐간된 학술지의 서지정보 즉 학술지명, 권, 호, 페이지를 기술하여 이차출판임을 밝혀야 한다. 국문학술지에 같은 내용으로 한글로 게재하면 중복출판이다.

공동발행 학술지의 저자표기 (1)

여러 국가의 저자가 공동 참여한 논문을 국외학술지 게재 후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하려 한다. 국외학술지 논문의 저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하려면 이차출판을 위한 절차, 논문에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저자됨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또한 번역에 참여한 사람이 저자됨을 가질 수 있는가? 제1저자, 책임저자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답변:

이미 출판된 외국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게재하는 것은 이차출판이 아니라 중복출판에 해당된다. 즉, 중복출판은 이미 어느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다시 다른 학술지에 출판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차출판은 아래 요건을 갖출 경우로 제한한다.

- 1) 일차와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에게 동의를 받고,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은 일차출판 논문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출판된 학술지의 선취권을 존중한다.
- 3)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이차출판은 축약판으로 충분하다.
- 4) 이차출판은 일차출판의 자료와 해석을 가감없이 성실하게 기술한다.
- 5) 이차출판될 논문의 표지에 이 논문이 이차출판임을 명기하고 원전을 밝혀서 독자, 상호심의회, 색인자 등이 알도록 해야 한다.

공동발행 학술지의 저자표기 (2)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영문논문에 일부 자료를 추가하여 한글논문으로 게재하면서 이를 밝힌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이미 영문으로 발표된 논문을 한글로 바꾸어 발표하는 것은 중복출판이다. 원자료 일부와 최근 자료를 추가하여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처럼 투고해도 연구의 핵심결과가 포함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한 번의 연구로 한 개의 논문 발표가 일반적이지만 내용이 다르다면 여러 개도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 연구, study group 연구, 또는 다기관 연구 등과 같은 대규모 연구인 경우 연구 결과가 방대하고 내용이 복합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지면의 제한 등으로 간추려 투고하게 되므로 내용이 중복없이 나눌 수 있는 경우 제1보, 제2보 등으로 동일 학술지에 연속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허용되는 이차출판은 연구의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연구자의 이름이나 순서 또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연구의 내용을 간추린 축약판은 허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양측 편집인의 허가를 얻어 반대의 순서로, 즉 부피가 큰 국내 논문을 먼저 게재하고 줄인 논문을 외국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독자층이 다르던지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학제 지침의 공동게재

학회의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고 이를 학회의 공식 국문 학술지에는 한글로, 동일학회의 공식 영문학회지에는 영문으로 게재하기 위해 학회의 양쪽 편집위원회의 동의와 승인을 득하였다. 동시에 같은 호 issue에 게재하는 것과 1~2개월의 차이를 두고 다른 호 issue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가능하다.

공동 학회의 가이드라인의 다 학술지 게재

4개의 학회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학회지에 게재하려고 할 경우 저작권료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즉, 1) 중복으로 게재되는 모든 학회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가? 2) 만약 모든 학회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면 이를 받지 않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3)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표와 그림을 도용해서 사용하였다면 이 표와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 학회나 저자에게 모두 사용허가서나 양도동의서를 받아야 되는가?

답변: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4개의 학회지에 게재 가능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같은 내용이고, 서지사항도 같으므로 4개 학회지에 동일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각각 게재하고자 할 때, 각각 잡지는 논문의 종류를 〈Editorial〉이나 〈가이드라인 소개〉라는 항목으로 해서 (중설이나 원저로 취급하지 않고) 분류하고, (주)나 기타 방법으로 게재하는 목적과 이 가이드라인이 어디 출처인지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이 방법을 취하면 중복출판은 아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본래 만든 특정 학회나 집단의 소유(저작권이 특정 학회에 있음)이고 이미 허락된 상태에서 게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출판 후, 출판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표방하고 있는 Open Access 학술지이면 자료가 전부 공개 된 것이기에, 그 내용을 다른 자가 표나 그림을 사용하고자할 때, 출판된 학회지의 학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복출판, 다른 과에서 동일 대상을 증례로 한 경우

같은 병원의 감염내과와 안과에서 같은 증례로 논문을 작성하고 각각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였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또한 한 과에서 먼저 논문을 투고하고 원고가 게재된 후, 타 과에서 “○○ 학술지에 게재 완료된 논문에 대한 의견”과 같은 형식으로 타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원칙적으로 한 증례는 한 개의 증례보고가 원칙이며 같은 증례에 여러 과들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종합된 증례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각 출판되었을 경우 독자들이 다른 증례로 오해할 수 있고, 나중에 증례의 수집에서 한 증례가 각각 다른 증례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투고 출판된 증례에 대하여 타 과에서 의견을 제시할 경우 먼저 처음 논문의 증례 출처를 밝히고, 타과에서의 발표된 연구목적(focus)과 달라야 하고 이 경우에는 증례 보다는 addendum이나 단보(brief communication)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 대상의 다른 영역 게재

특정 질환의 전신마취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취관리의 예측될 수 있는 어려움으로 순환기내과 자문을 받았다. 이후 이 사례에 대한 연구를 마취과에서 준비하던 중 우연히 흉부외과에서도 이 동일한 특이 환자사례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일한 환자이나 두 과에서 이 환자사례에 대한 연구는 주제를 다루는 시각이나 접근방식에서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대상은 동일하나 관점이 다르면 중복출판이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례이므로 사례의 기본적인 기술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동일한 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두 번 째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에서 게재의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먼저 투고한 논문에 대한 정보와 동일 대상임을 알려줌으로써 편집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복출판, 다른 언어이나 일부 대상이 같은 경우

두 논문(A, B)은 한글논문(A)과 영문논문(B)이다. 두 논문은 2008년 전국 다수의 병원에서 국내 요로감염 진료지침 작성을 위하여 급성 방광염과 급성신우염 환아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A, B 논문에서 급성 신우염 환아는 동일 대상이며 두 논문의 데이터의 모집방법, 참여병원 및 연구기간이 같다. 그러나 A 논문은 방광염과 신우염을 비교하고, B 논문은 신우

염의 항균제 내성만을 언급하여 두 논문의 가설과 목적은 다르고, B 논문은 A 논문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B 논문에서 A 논문의 일부 결과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B 논문에서 A 에서 발표된 신우염 환자의 자료를 인용없이 기술한 것은 이미 A 논문이 발표된 상태에서 문장재사용(text recycling)일 수 있다. 특히 A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Open Access (OA) 저널이 아닌 경우 반드시 B 논문 작성과정에서 A 논문의 일부 표 사용에 대해 해당 학술지의 편집장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Open Access (OA) 저널이라도 이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중복출판일 수 있다.

중복출판, 대상 일부가 같으나 연구목적이 다른 경우 (1)

비교적 빈도가 낮은 질환을 가진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방향(예를 들면 한 논문은 진단, 다른 쪽은 치료 등)의 연구가 시행되어 발표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빈도가 낮은 질환을 공동연구로 실태 조사하는 것이고, 연구목적이 다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 환자 중 일부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동일한 대상자임을 표기한다면 중복출판이 아니다.

중복출판, 대상 일부가 같으나 연구목적이 다른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치료받은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예후 관련한 인자를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라 A 논문은 특정 세포형으로 분화 유무가 전이병소와 예후에 미치는 영향, B 논문은 전이 시기와 갯수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 C 논문은 전이병소 제거술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D 논문은 완전 전이병소 제거술 후 면역치료 여부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각 관련요인들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 분석하여 하나의 연구논문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편의 연구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었고 제1저자와 책임저자가 4개 논문에서 동일하며 또한 동일한 문장이 각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소위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으로 지적하는 자기표절(self plagiarism)의 한 유형이고, 분절출판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중복출판, 일부 같은 대상이 포함되고 다른 언어로 발표된 경우

두 논문(A, B)은 영문논문(A)과 한글논문(B)으로 책임저자는 같으나 공동저자는 다르다. A 논문은 short communication이고 B 논문은 원저이다. 대상자가 특정 계층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B 논문에서는 A 논문이 제한이 있어서 수행되었음을 밝히면서 A 논문을 문헌에 인용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두 논문 모두 표기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가설, 연구장소 및 연구방법으

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유사하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연구가 다른 기간에 수행되어 대상의 중복이 없었다면 중복출판의 엄격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동일한 가설, 연구장소 및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결론도 거의 같이 새로운 정보가 없다. 광의의 중복출판이다.

중복출판, 대상 또는 관찰기간이 늘어난 경우

A 교수가 증례(같은 주제)를 묶어서 한글논문으로 이미 출판하였다. 같은 병원의 B 교수가 앞의 증례에 새로운 증례를 합하여 분석한 논문을 SCI급 저널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책임저자는 A 교수, 제1저자는 B 교수로 하고 이 논문에 앞의 증례가 포함되었다고 참고문헌을 통해서 내용상에 기재할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ICMJE의 내용을 인용하면,

"When submitting a paper, the author must always make a full statement to the editor about all submissions and previous reports that might be regarded as redundant or duplicate publication of the same or very similar work. The author must alert the editor if the manuscript includes subjects about which the authors have published a previous report or have submitted a related report to another publication. Any such report must be referred to and referenced in the new paper. Copies of such material should be included with the submitted paper to help the editor decide how to handle the matter."

따라서, 참고문헌에 포함시키고 고찰에 내용을 밝히는 것 외에도, 위의 내용과 같이 편집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쓰고 별책을 함께 보내서 해당 학술지 편집인이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복출판,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이 추가된 경우 (1)

A 논문은 수년 전 여름 개원의 연구망을 통해 '가정의는 어떤 경우 의뢰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고, B 논문은 동일 연구자가 같은 연구를 다른 시기에 실시하여 '가정의는 어떤 경우 의뢰를 하는가?'를 다시 투고한 것이다. 대상은 동일하지 않으나 방법과 분석은 거의 동일하고 결과에는 성별 분석이 추가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동일 연구자가 동일한 대상 질환에 대해 연구를 추가하거나 기간, 대상을 추가한 경우도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방법과 결론이 같고 단지 방법에 작은 부분이 추가된 것이므로 덧붙이기 출판이다. 이러한 논문의 경우 원저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집인에게 드리는 글'의 형태로 이전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의 중요성은 편집인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다.

중복출판,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이 추가된 경우 (2)

두 논문(A, B)은 코호트대상군에서 같은 간암발생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B 논문은 첫 번째 A 논문에서 분석한 간암 발생 요인으로 공복시 혈당 요인 외에 대사증후군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B 논문에서 먼저 출판한 A 논문의 '대상'이 B 논문에 포함되었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참고문헌에서는 A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원칙적으로 덧붙이기 출판이다. 나중에 수행된 연구에서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가치 있는 논문이 될 수도 있으나 추가된 새로운 요인이 연구의 새로움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대상만을 확대한 덧붙이기 출판이다. 이 부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요구된다.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같은 내용이므로 이미 유사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고,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서론에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서론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로 일차 연구 결과가 소개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추가연구가 진행된 당위성을 밝혀야 한다. 대상의 중복여부 역시 언급해야 한다.

중복출판,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이 추가된 경우 (3)

A 논문은 2004년 전체 우울증 외래 환자의 현황(약물투여, 공존질환 등) 분석을, B 논문은 2002년 우울증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경과 관찰하여 약물순응도 조사를, 그리고 C 논문은 2002년 우울증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경과 관찰하여 약물순응도에 따른 보험청구상 약물 재투여, 입원, 응급실 방문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다시 연령대별로 우울증을 분석하거나 특화해서 분석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A 논문은 대상과 주제가 다르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B 논문과 C 논문은 동일 대상과 주제이므로 C 논문은 B 논문의 덧붙이기 출판이다. 단, C 논문의 출판을 위해서는 C 논문의 대상 및 방법에 B 논문이 포함되어야 하고, B 논문을 참고문헌에 인용하면서 C 논문을 투고한 학술지 편집장에게 허락을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B 논문과 C 논문은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항 후 준비하는 논문은 앞의 논문들과 대상과 주제가 같은데 논문의 관점만 다른 것이어서 앞의 논문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분절출판의 위험이 높다.

중복출판, 표절 문제 처리

기 발행된 국내 학술지의 특정 논문(A)의 그림이 동일한 시기의 국외 SCI 학술지에 게재된 B 논문에 사용되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가 스스로 A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출판으로 인한 제재는 책임저자에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모든 저자에게 해당되는가? 연구비 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과 연구비 제공기관에 모두 통보를 해야 하는가? 중복출판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 경우 책임저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제기된 문제이어서 고의적인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기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처리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답변:

가독성을 고려해 A 논문, B 논문의 접수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B 논문의 접수일이 A 논문 승인일 다음이므로 선취권은 A 논문 학술지가 가지고 있다.

두 논문의 주제어와 저자가 대부분 중복되고, 두 논문의 경우 A 논문은 B 논문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임상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물로 파악되므로 두 논문은 병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논문을 합칠 수 있다면 분절출판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도 있고, 중복출판이라면 retraction의 사유가 된다.

중복출판 문제와 별개로 두 논문의 동일한 그림은 B 논문이 A 논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명백한 표절에 해당된다. 이 점에서 원칙적으로 B 논문은 retraction되어야 하며, 중복된 저자는 모두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 처벌의 수위는 학회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다.

B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해당학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만일 학술적 가치가 있어서 논문을 존속시키고자 한다면 A 논문의 그림과 동일한 B 논문의 그림은 공식적으로 삭제하는 Erratum처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출판윤리의 처리와 적용에서 보편적이고 통상적이지 않다. 만일 학회에서 Erratum 절차를 선택한다면 이 절차를 취한 후에 A 잡지에 그 사실을 알려서 양해를 얻는 것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판단 역시 해당학회에서 해야 한다.

중복출판, 연구 결과, 방법, 결론이 동일하지만 대상을 분할한 경우

두 논문은 young mice (A 논문)와 mature mice (B 논문)를 대상으로 약제유도 경련의 특정 약제의 항경련 효과를 파악하였다. 가설에서 B 논문은 A 논문과는 달리 연령효과를 보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두 논문은 저자가 모두 동일하며, 연구방법, 결과 및 결론 역시 모두 동일해서 새로운 정보가 없다. 또한 B 논문에서 A 논문의 문장 재사용이 발견된다. 그러나 두 논문의 연구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복출판에 해당되는가?

답변:

연구기간이 동일하다면 분절출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기간이 다르고, B 논문의 목적인 연령효과의 가설이 해당 학문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B 논문은 성립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B 논문의 문장 재사용 의심 부분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문장을 기술할 때 A 논문과 같지 않도록 새롭게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B 논문을 발표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면 A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에 correspondence나 letter to the editor 혹은 brief communication으로 A 논문의 결과를 기초로 연속성을 갖고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중복출판 –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하여 게재된 경우

두 논문(A, B)은 한글논문(A)과 영문논문(B)으로, 일부 저자의 차이가 있지만 책임저자가 동일하다. 논문내용 즉,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 영문초록, 그림 및 그림 설명이 모두 동일하고 참고문헌도 거의 동일하다. 두 논문의 투고시기도 거의 같아서 한글논문 투고 3개월 후에 영문논문을 투고하여 이중투고를 하였다. 영문논문 투고 당시 먼저 투고한 한글논문 투고 사실을 영문논문 편집장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두 논문이 모두 같은 해에 게재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저자가 알리지 않았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답변:

전형적인 중복출판이다.

중복출판 – 게재된 한글 학위논문을 영문논문으로 게재하면서 저자도 변경한 경우

모씨는 박사학위(A)를 취득한 후 해당 논문(B)을 지도교수와 함께 공저자로 학위논문을 OO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후 수년 후 모씨는 학위논문을 지도교수 이름을 제외하고 제3의 저자와 함께 영문으로 국외학술지에 게재(C)하였다. 중복출판의 의심자 모씨는 B 논문의 취소(retraction)를 요청하였다.

답변:

박사 학위논문을 정리해서 저자에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OO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문제가 없는 출판 절차이다. 그러나 수년 후 내용이 거의 유사한 영문논문을 출판한 것은 중대한 중복출판이며, 저자가 바뀐 점과 과거 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사실은 저자가 중복출판을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구출판윤리에서 연구 부적절행위에 속한다. 영국의 'COPE 가이드라인'과 의평협 발행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복출판의 경중을, 경미한 중복을 일부 중복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예: 하위 집단, 추적관찰 기간 연장 등)으로, 중대한 중복을 중복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예: 전부, 일부 자료가 동일, 제목, 저자 순서 변경, 과거 논문 인용 하지 않는 등 저자가 중복게재를 숨기려 한 증거가 있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C 논문에 포함된 제3의 저자는 실제 연구에 기여가 없는 선물(명예)저자일 가능성이 크다.

OO학술지에 B 논문을 철회(취소)하고자 신청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나중에 출판된 C 논문보다 먼저 출판된 B 논문이 선취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B 논문을 취소 신청하기 위해서 B 논문의 공동저자와 책임저자들에게 먼저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고, 이 절차를 갖지 않았다면 B 논문의 공동저자와 책임저자의 저자됨(authorship)이 문제가 되어 저자됨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학술대회 초록집과 이차출판

학회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발표자료집을 제작하는데 발표논문 1편당 A4 25면 정도의 분량으로 원고 전문이 실리게 될 때 이후에 이 전문을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통상적으로 용역연구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연구는 결과발표회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연구결과의 요약을 모아 발표자료집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발표자료집은 서지사항을 갖추어 등록된 학술지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학술지에 게재가능하다.

타 학술대회 발표 연구의 게재

A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심포지움으로 발표되었던 논문을 A 학회가 아닌 B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심포지엄에 발표한 초록이나 proceeding 인 경우 타 학술지에 원저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타 학술지에 게재 시 접수 논문 표지 하단에 “본 논문의 주요 요지는 0000년 0000심포지엄 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타 학술지의 게재 원본에 이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록집에 발표된 원고의 학술지 게재

학생이 연구 수행 후 ISSN에 등록되지 않은 교내 proceeding 에 게재한 후 학술지 게재하면서, 제1저자를 지도교수나 그 외 연구자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학술대회나 기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에 수록된 초록이나 proceeding은 정식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초록, proceeding은 전문가심사가 이루어진 정식 논문이 아니고 단순히 특정 목적의 자료로 준비된 것이다. 하지만 연구논문 모음집(proceeding)에 ISSN이 부여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ISSN 번호가 없는 교내 보관용 모음집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초록, proceeding의 학술지에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은 중복출판이 아니다. 초록, proceeding의 내용을 정식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논문의 저자는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Updated December 2013)의 지침이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발행 출판윤리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저자됨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저자들의 합의로 저자목록을 구성하고, 저자목록에서 제1저자는 초록, proceeding의 연구에서의 제1저자가 그대로 제1저자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학위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약해서 연구를 더 추가하여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제1저자가 바뀔 수 있다. 이 역시 상식적인 선에서 책임저자가 공저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며,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지도교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대중 매체에 게재할 경우

학술대회 발표된 논문 내용 중 일부를 신문사의 학술면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연구결과를 학술대회에서 초록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직 논문이 출판되지 않은 단계로 간주한다. 따라서 초록 내용이 신문이나 기타 언론에 기사화되었다더라도 완성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복출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술대회에서 초록으로 발표한 내용 아직 전문가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대중매체에 게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매체를 본 환자 등이 내용에 대하여 의사에게 문의하였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의사가 갖고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초록만 있는 상태에서는 대중매체에 알리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